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911
----------	-----

2019. 9.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9. 8. 7.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9. 8. 13. 회부)

2. 제안이유

-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수정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주거약자 등”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7조)
- 종전의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 변경하여 “지역센터”와 구분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각각 규정함 (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5. 23. ~ 6. 12.)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주거복지제공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수정하고,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 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주거복지사업 대상 확대(안 제7조제10호)

- 안 제7조제10호는 “주거약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9호에서는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주거복지사업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주거복지센터의 명칭 구분(안 제19조)

-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주거복지센터(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지역센터)”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주거복지센터(센터)”는 “중앙주거복지센터”¹⁾로 불리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위계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구분(안 제20조)

- 안 제19조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을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안 제20조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수정·신설하려는 것임.
- 우선,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앙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지역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음.

구 분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
구축시기	2018년 12월	2012년
사용현황	9개소	16개소
개인정보보호	1차 : 방호벽(ID, PW입력) 2차 : 개인정보 암호화 3차 : IP추적	1차 : 방호벽(ID, PW입력)
구축비용	15억원	3천만원
주요기능	종합복지서비스 -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급여, 주택금융, 주거복지자가 진단, 주거복지콜센터 연계 등	주거상담 사례관리 -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자료 :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7503호(2019.4.18.)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사용확대 추진계획”)

1)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2018.3.1.~)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및 주거복지 교육네트워크 사업, 주거복지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이는 민간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16개소의 개인정보처리 운용 실태점검 결과²⁾, 대부분의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 16개소와 SH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통합관리를 위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붙임 2 주거복지센터 위탁현황 참조).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³⁾으로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용해온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SH공사에서 구축·사용 중인 “주거복지통합시스템”으로 이관시키고, 데이터의 검증 및 시스템 사용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어, 안 제20조 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중앙센터를 통해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지역센터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됨.
- 안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과,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6157(2019.3.18.) “민간법인 위탁 주거복지센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내용

- 대부분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 상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지키지 않고 있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도가 높으며, 매우 미흡하고 취약함
- 대부분의 주거복지센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민간법인위탁(16개소) 주거복지센터와 SH공사 위탁(9개소) 주거복지센터, 각각의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음.

3) 주택정책과-7503(2019.4.18.)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사용확대 추진계획”

발굴하여 각종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경우 지역센터로 하여금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여 주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사건⁴⁾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센터에서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역센터에서는 해당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한편 지역센터가 보다 현장 중심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이외에도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조문의 정비(안 제21조 및 제24조)

- 안 제21조 및 제24조는 앞서 안 제19조에서 중앙센터로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음.

4) 2019년 7월 31일 SH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봉천동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탈북모자가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건. 사인은 불명으로 판명되었으나 집안의 식료품이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아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사건임. 이 세대는 장기간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나, 관계기관에 통보되지 않았고, 양육수당 외에 관계기관이나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마. 입법예고 결과(붙임 3 참고)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19.5.23~'19.6.12) 특정 조문의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 첫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수평적 관계이므로 중앙센터에서 지도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⁵⁾이 접수되어,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한 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이 조례 제21조제3항에서는 필요 시 중앙센터가 지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앙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수직적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 센터간 관계설정 규정 조문이 없어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 서울시와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체결한 “주거복지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제3항⁶⁾에 따르면,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상황이나 관련서류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어, 사실상 협약서를 근거로 중앙센터가 지역센터의 업무 및 관련서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둘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전문성 및 안정성을 위해 **현행 2년의 위탁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5) 당초 입법예고 제20조제1항제8호에서는 중앙센터의 기능으로 “지역센터의 지도점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음

6) 제11조(지도·감독)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상황·관련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탁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최초 위탁 후 6년간 재위탁을 해 온 7개⁷⁾ 지역센터는 금년 12월 31일 수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바,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소급적용 여부와 함께 다른 주거복지센터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 결론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못지않게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체계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지역주거복지센터와 명칭을 구별(센터→중앙주거복지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일부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적절성이 인정됨.
- 다만,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주거복지통합사례관리시스템과 같이 개

7) 성북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나눔과 미래)
 강북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강북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은평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마을과 사람)
 서대문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희망마을)
 금천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한국주거복지협회)
 관악주거복지센터(수탁기관 : (사)관악주민연대)

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시스템의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SH공사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승윤
연락처	02-2180-8207
이메일	syhan@seoul.go.kr

[붙임 1]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붙임 2] 주거복지센터 위탁현황

연번	센터명	수탁기관	위탁횟수	최초위탁일	위탁시작일		
					1차	2차	3차
1	종로	(사)나눔과미래	1회	2018-03-01	-	-	2018-03-01
2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3-01	-	-	2018-03-01
3	용산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3-01	-	-	2018-03-01
4	성동	서울주택도시공사	2회	2016-08-17	-	2016-08-17	2018-01-01
5	광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회	2018-03-01	-	-	2018-03-01
6	동대문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4-01	-	-	2018-04-01
7	중랑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4-01	-	-	2018-04-01
8	성북	(사)나눔과미래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9	강북	(사)강북주거복지센터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10	도봉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3-01	-	-	2018-03-01
11	노원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12	은평	(사)마을과사람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13	서대문	(사)희망마을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14	마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1회	2018-03-01	-	-	2018-03-01
15	양천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4-01	-	-	2018-04-01
16	강서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1회	2018-03-01	-	-	2018-03-01
17	구로	(사)구로시민센터	1회	2018-03-01	-	-	2018-03-01
18	금천	(사)한국주거복지협회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19	영등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합회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20	동작	(사)주거복지연대	1회	2018-03-01	-	-	2018-03-01
21	관악	(사)관악주민연대	3회	2013-12-13	2013-12-13	2016-01-01	2018-01-01
22	서초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4-01	-	-	2018-04-01
23	강남	(사)해냄복지회	1회	2018-03-01	-	-	2018-03-01
24	송파	(사)위례	2회	2016-08-17	-	2016-08-17	2018-01-01
25	강동	서울주택도시공사	1회	2018-03-01	-	-	2018-03-01

[붙임 3] 입법예고결과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형준 ○ 노원주거복지센터 ○ 김송희 ○ 이민선 ○ 정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조직으로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앙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음(개정안 제20조 제1항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 지원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주거복지센터 ○ 한선희 ○ 정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문성 및 안정을 위해 현행 2년 위탁기간 연장 필요(조례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10개소로 시범운영을 거쳐 '18년도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현재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힘쓰는 단계이며, 위탁기간 연장은 현 체계가 안정된 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주거복지센터 ○ 정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제21조 제3항)에서는 중앙센터가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25개 지역센터는 모두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1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재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중앙과 지역센터 각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개정대상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은 사례관리 기록을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문구 삭제 요청(개정안 제20조 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은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주거복지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구축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문구임